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3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 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 서울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혼부부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